

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면?

(국세청, 2007. 5.)

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,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.

특히,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. 게다가 상속인들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·납부하게 되어있어,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.

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다. 금융감독원(소비자보호센터)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·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따라서,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 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.

●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

구 분	주 요 내 용		
조회대상	피상속인 명의의 예금, 대출, 보증, 증권계좌, 보험계약,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		
신청자격	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		
신청방법	서 울	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	
	지 방	금융감독원 각 지원(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)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	
구비서류	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		
	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미기재된 경우	피상속인의 사망 피상속인의 실종	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 (실종선고) 원고
	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• 대리인의 신분증 	
문의처	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(☎ 국번 없이 1332)		

●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

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·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·군·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「조상땅 찾기 제도」를 시행하고 있다.

구 분	주 요 내 용	
신청자격	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	
신청방법	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	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·도 및 시·군·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	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	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	피상속인의 제적등본, 상속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	
문의처	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(☎ 02-2100-3894)	

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(신고불성실 10%~40%, 납부불성실 1일 0.03%)를 물게 된다.

그러므로,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위와 같은 확인·조회를 거쳐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,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못하거나,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.